

## 연구윤리위원회규정

제정 : 2011.06.30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 윤리위원회의 구성, 임무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대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라 칭한다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  
<개정 2011. 11. 22.>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01.>

②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, 사무처장, 입학학생취업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기능 및 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구윤리·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
3.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5.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

다. 다만, 위원회 소속 위원이 해당 사건의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제7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, 이때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경비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세칙) 위원회는 연구윤리 검증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